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표지 면지



# 목 차

## 환영사

임순례   카라(KARA) 대표 .....	1
박홍근   국회의원 .....	3
이현승   국회의원 .....	5
황주홍   국회의원 .....	7
이정미   국회의원 .....	9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11

## 주제발표

발제 01 : 한국의 동물보호와 애니멀호딩의 현주소-사례와 유형 .....	13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발제 02 : 고양이 애니멀 호딩 사례 검토와 특징 .....	25
유주연   (사)나비야사랑해 대표	

## 패널토론

좌 장 : 함태성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01 :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51
토론 02 :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교수/범죄심리학회 회장 .....	61
토론 03 :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	67
토론 04 : 이해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 .....	71
토론 05 : 박운선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	77
토론 06 : 김문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	



# 환영사



카라(KARA) 대표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KARA)의 대표, 임순례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최근 ‘애니멀 호당’ 문제에 따른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려 왔고 그 뜻을 국회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생각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잘못된 채로 고통에 내몰려 있는 동물들을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동물운동의 근간이 되는 반려동물의 복지는 다른 동물의 복지를 가늠하는 면에서도 큰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라의 동물운동 역시 반려동물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아지공장 필드조사와 불법 번식장 대응 활동,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를 모토로 한 입양 캠페인, 동물보호 인식 증진 및 평생 돌봄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국가의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설보호소 지원과 봉사 등 활동의 범주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물건 취급 당하는 동물이 아무에게나 판매될 수 있는 사회에서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고정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위탁이 대다수인 지자체 시보호소는 이를 감당하지 못

하고 10일간의 단순 수용 기능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입소 동물들의 절반 가까이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농장은 반려동물의 무덤으로 기능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제대로 된 보호자와 돌봄 환경이었다면 행복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많은 동물들이 안타깝게 아스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사육 기준은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받은 목줄에 매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하고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집 안에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개들도 있습니다. 고양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니멀 호딩은 이같은 방치의 극단적 수위로서 병적으로 동물을 수집하거나, 번식에 번식을 거듭하여 어느새 너무 많은 수의 동물들을 거느리게 되거나 하여 동물의 복지를 현격히 떨어뜨리고 심지어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동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곧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통하며 그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살뜰한 돌봄과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 양육이 결정되고, 동물 사육에 대한 올바른 상식이 널리 전파되어 준수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국회의원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관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려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의 관리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가정에서 개 37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4마리는 이미 숨을 거뒀고 33마리는 분변과 사체가 쌓인 공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애니멀 호더’ 사건입니다.

1981년 발표된 미국 공중보건학술논문에 따르면 ‘애니멀 호딩’의 기준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키우는 것 △전염병·영양 결핍·비위생적인 환경에 동물을 방치 △동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부정 △ ‘애니멀 호딩’ 행위로 동물은 물론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부정 등입니다. 실제로 많은 ‘애니멀 호더’들은 자신이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애니멀 호더’ 대부분이 소유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지품의 대상으로 동물을 택해 병적으로 수집하여 사랑은커녕 최소한의 보살핌도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잔인한 학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애니멀 호더’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책임질 만큼의 여력이 없는 경우 나도 모르게 ‘애니멀 호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지원, 미비한 동물 복지 시스템이 의도치 않은 ‘애니멀 호딩’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반려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은 ‘애니멀 호더’에 대해 강력한 처벌·방지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세밀한 동물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사육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와 싱가포르의 철저한 사전 관리로 동물 수집 행위 자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애니멀 호딩’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재발 방지와 예방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애니멀 호딩’으로 인한 동물학대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번 토론회가 ‘애니멀 호딩’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환영사



국회의원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현승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국회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박홍근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사단법인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님, 나비야사랑해 유주연 대표님, 좌장을 맡아주신 동물복지위원회 함태성 위원장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팀장님, 서울시 김문선 팀장님, 한국성서대 김성호 교수님, 한국범죄심리학회 김상균 회장님, 이해윤 변호사님, 행강 박운선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애니멀 호딩의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TV 동물농장’을 통해 좁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이 길러지고 그중 다수는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애니멀 호딩은 동물에게도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소음, 악취, 감염병 등을 통해 사육자 본인과 주변 이웃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위한 공공 보호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사설 보호소로서의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하는 애니멀 호딩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공공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고,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회 구조적인 개선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사정이 생기면 길가에 유기하고,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을 데려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2차 학대를 가하는 나쁜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물복지에 뜻을 함께하는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부 실무자,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애니멀 호딩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기를 바라며, 토론자분들과 내빈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국회의원 황주홍

안녕하십니까! 황주홍 의원입니다.

‘애니멀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주최자로 참여해주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실 ‘(사)동물권행동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이미 천만 마리를 넘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복지와 관련된 제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은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수 많은 동물복지 관련 난제 중에서 특히, 자신의 관리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애니멀호딩(Animal Horading)’으로 인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많은 동물들이 죽음과 질병의 위협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되어 오던 동물학대 행위 중 하나인 ‘애니멀호딩’의 만연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애니멀 호딩’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발굴에 기여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 환영사



국회의원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동물복지포럼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해 공동주최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의원님, 자유한국당의 이현승의원님, 민주평화당의 황주홍의원님,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장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동물권행동 카라 임순례대표님, 전진경이사님과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패널분 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반하는 심각한 동물학대인 ‘애니멀 호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은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결국은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애니멀 호딩’의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법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육관리 의무 위반을 동물학대로 처벌하려는 것에 국한되는 등 제도적·행정적 미비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언론에 실린 농림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의식 조사’에서 답변한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

구로 환산할 때 9만 가구, 약 2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의 약 2.3% (약23만명)가 반려동물 5마리 이상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38명에서 2015년 264명으로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문화가 악용되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니멀 호딩’은 지난 수 십년 전부터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동물권 단체인 ‘동물의윤리적처우를바라는사람들’(PET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는 애니멀호더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주지 조사 후 ‘동물 소유 평생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싱가포르의 반려견등록제를 통해 4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애니멀 호딩’의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과 사후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동물복지’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할 ‘동물기본법’ 또한 동물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앞으로의 ‘애니멀 호딩’문제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정의당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애니멀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물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박홍근, 이현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학계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물에게 바람직한 돌봄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호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는 개나 고양이 등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방치하는 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잔인한 학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애니멀 호딩(Animal Hording)’을 동물학대 행위로 인정해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애니멀호더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 적절한 사육공간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동물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멀호

딩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니멀호딩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국회토론회가 앞으로 정부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동물복지를 위해 지혜와 경륜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발 제 01 ·

# 한국의 동물보호와 애니멀호딩의 현주소 - 사례와 유형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 1. 동물권행동 카라의 반려동물 복지 증진 활동과 애니멀 호딩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 복지 훼손과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양활동을 통한 보호자 교육과 평생 돌봄을 위한 책임감 고취, 번식장 필드 조사와 불법 번식장 대응 활동, 대규모 케어테이커 TNR 지원 활동 및 이를 토대로 한 정책 활동과 법개정 활동 등이 일부 예이다. 한편 필드에서는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을 시민 자원봉사 활동과 연동 진행하며 보호소에 실질적 도움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을 제고하였다. 이외 제보되는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며 해결을 도모해왔다. 특이한 것은 최근 이삼년 간 애니멀 호딩 사례가 더욱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제 3자(개인, 지자체)가 호딩 상태에 방치된 동물들의 보호를 요청하지만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기 활동 과정에서 접하게 된 애니멀 호딩과 관련된 주요 사례로부터 현황을 바라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애니멀호딩의 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 이후로 동물과 사람 모두가 고통받는 애니멀 호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길 바란다.

## - 동물권 행동 카라의 애니멀 호딩 대응 주요 사례 -

- 2010년~2016년 - 여주 반송원(폐쇄후 안성 평강공주 보호소에서 생존 개체 보호 중)
- 2010년~2014년 - 용인 생명이네(폐쇄 후 카라에서 직접 또는 위탁 보호 중)
- 2013년 - 여주 애니멀호더(5월 환경정비, 8월 폐쇄, 폐쇄후 카라에서 직접 또는 위탁 보호 중)
- 2013년~ 2016년 - 희망이네 '보호소' 정상화 노력과 실패- 33마리 야생 개체 구조 보호 중
- 2017년~ 2018년 - 부천 품종견·묘 수집자, 잠실 고양이 다두 사육자, 성산동 개 다두 사육자, 안산 고양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종 애니멀 호더 사례 대응하며 다수의 동물 구조 입양활동, 중성화와 치료 지원



## 2. 애니멀 호딩이란?

1) 애니멀 호딩 : ‘능력 이상의 과도한 마릿수의 동물을 키우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행위, 그러나 동물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보살핌이 적절하지 못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이는 호딩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애니멀 호딩의 결과 :

- 먹이, 생활, 수면, 안정을 취할 공간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받지 못함
- 분변, 쓰레기, 동물사체 등이 방치되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질병 유발
- 개체수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싸움으로 인한 부상 혹은 사망과 수의학적 처치 부재
- 중성화 미비로 어린 개체의 연이은 탄생과 개체수의 추가 증가
- 냄새, 소음으로 주변 민원 유발 및 동물과 동물 사육자에 대한 혐오 유발

## 3. 애니멀 호딩의 현주소

최근 들어 애니멀 호딩에 의한 제보와 구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애니멀 호딩은 재개발 길고양이, 소위 ‘산으로 간 유기견’ 문제 등과 더불어 대형 동물복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고 조용하여 좁은 공간에 다들 사육이 가능한 고양이 호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애니멀 호딩이 늘어나는 이유는 ① 수집 강박과 현대인의 외로움 등으로 인한 병적 호딩의 증가 ② 반려동물 키우기 일반화에 못 따라가는 지체된 반려동물 문화로 인해 중성화 수술과 같은 필수적 돌봄의 지식과 정보 및 자원 부족으로 결국 호딩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③ 개식용, 불법 대규모 번식장 문제 등 낙후된 동물의 현실과 이를 해결할 법제도의 미비로 파생된 개인들의 보호소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거나 더 심각한 경우는 애니멀 호딩의 상태로 전락한 경우이다. ③의 경우에 대구 한나네 보호소와 같은 일부의 ‘사설보호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이 3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과 관심의 증가로 방치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개입하거나 동물단체에 도움이나 제보를 하는 것도 애니멀 호딩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애니멀 호딩 문제는 심각한 반려동물 복지 침해 이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개식용과 대규모 번식장의 난립, 극히 열악한 지자체 보호소의 상황 등으로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생성한 사설보호소 문제가 더해져 있다.

이때, 사설보호소 문제는 결국 개식용, 불법 번식장 문제와 하나이며, 낙후된 동물보호체계 하에서 파생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민(개인)-관(정부/지자체)-민(단체)이 함께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후로 국가와 사회는 사설보호소가 체계를 갖추며 발전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사설보호소는 점진적으로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 4.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의 늪, 애니멀 호딩 - 사례와 대응

☞ 전 유형 공통 사항 : 문제 해결 능력 부재, 자원과 정보의 부족, 교육과 지원의 부족

사례	동물	성별 (연령대)	주요 호딩내용	수집 강박	주변 민원	자체 동물보호	사회 복지
<b>소규모 30마리 이하</b>							
부천 품종묘·견 수집자	개 고양이	남(50대) 알콜중독 부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 강아지와 고양이를 불결하고 좁은 원룸에서 키우면서 외부에 데리고 나와 학대하는 모습을 노출,</li> <li>- 동물 긴급 격리 후에도 다시 동물을 추가 매입하며 자신은 동물을 잘 돌보고 있다고 착각.</li> <li>- 한 마리의 동물이 아사되고 동물단체가 동물을 격리한 뒤에도 또 다시 3마리의 개와 1마리의 고양이를 추가 매입.</li> <li>- 여러 차례의 설득으로 최초 격리한 3마리의 동물 소유권 포기하고 현재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합 4마리의 동물만 사육 중.</li> <li>- 부천시 동물보호 담당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li> </ul>	+	+++	++	본인 거절
잠실 고양이 다두 사육자	고양이	남(40대) 배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우던 암컷 고양이 2마리를 중성화하지 않고 배회 사육. 연이은 임신과 출산으로 순식간에 늘어나 20마리가 될 위기에 처하자 외부로 방사.</li> <li>- 중성화 지원과 돌봄 교육 지원으로 더 이상 외부 방사하지 않음.</li> <li>- 고양이들은 반야생화로 입양 지원 불가능</li> <li>- 지역 주민들이 사육 상황 모니터링 중</li> </ul>	-	+	-	-
여주 애니멀호더	개	여(50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도의 더러운 환경에서 개들을 키우며 자체 번식으로 다수의 개들이 태어나고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 반복.</li> <li>- 쓰레기장을 방블케하는 생활 환경.</li> <li>- 최악의 동물관리, 개들의 심각한 야생화로 입양 불가.</li> <li>- 2013년 구조 이후 카라에서 보호 중,</li> <li>- 아주머님 정신치료 목적 입원</li> </ul>	+++	+++	+++	++
용인 생명이네 '보호소'	개	남(70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를 거두어 키우던 부부가 화재로 부인이 사망하고 이후 남편분 혼자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금을 기대하며 개들을 방치,</li> <li>- 카라에서 대형견 장애인 노령견들을 구조하고 '보호소' 해체</li> <li>- 노령견, 장애인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보호중 노령으로 사망하거나 카라에서 보호 중</li> </ul>	-	-	-	-
<b>중규모 30~100마리</b>							
안산 고양이호더 할아버님과 할머니	고양이	남(70대) 여(70대) 할아버님 경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연민하며 비둘기 밥과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할아버님이 집에 들인 고양이 3마리가 30마리 넘게 늘어남</li> <li>- 새끼들이 태어나면 (수를 줄이기 위해) 장에서 판매</li> <li>- 고양이 화장실 없이 아무 곳이나 배변</li> <li>- 수집해 놓은 도자기 프라이팬 등 각종 물품으로 쓰레기 집이 된 상황</li> </ul>	++	++	-	+ 본인 거절

사례	동물	성별 (연령대)	주요 호딩내용	수집 강박	주변 민원	자자체 동물보호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이들은 전원 진드기 곰팡이 범백혈구감소증에 감염됨.</li> <li>- 할아버님은 일을 하셔야 하고 할머니는 병환중이라 동물관리 사실상 불가능</li> <li>- 동물권행동 카라와 고양이보호협회 공동 구조와 치료 활동으로 33마리 개체중 18마리 회생시킴.</li> <li>- 봉사자 연계와 집중 사회화 훈련 거쳐 순화 활동으로 (11월 28일 현재)11마리 입양 성사</li> </ul>				
성산동 개 다두 사육자	개	여(30대) 건설 현장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를 연민하여 유기견을 들여 키웠으나 증성화 미비로 단기간에 개체수 과다 상태</li> <li>- 동물들을 케이지에 담아 동물단체에 유기하였음(1차 유기)</li> <li>- 동물 유기 후 양심의 가책으로 다시 데리고 갔으나 여전히 증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개체수가 더 늘어났기에 12마리를 흑한 속에 재 유기함.</li> <li>- 유기 후 누군가 버리고 간 동물이라고 항변했으나 자체 번식한 사실이 드러남.</li> <li>- 서울시와 함께 증성화 및 입양 지원</li> <li>- 일부 개체 카라 보호 및 입양 대기 중</li> </ul>	+	+++	+++ 서울시 입양지원 행사와 증성화 지원	-
새중 애니멀호더	개	여(70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40여 마리 이상을 눈썹을 염색하고 털을 깎아 기괴한 모습으로 외양을 치장하고 남은 음식물을 얻어 먹이며 키움</li> <li>- 개들은 피부병 등 다양한 질환에 시달림</li> <li>- 개들과 함께 마당에서 잠을 자거나 나무에 한복을 걸어 놓는 등 기괴한 생활 양식도 관찰 됨</li> <li>- 아주머니에게서 개들을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아주머니의 집착이 강해 개를 다시 모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큼</li> <li>- 개들을 수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점, 해당 지역 사회 복지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정신치료 지원 계획을 하고 있어 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돌봄 교육을 제안해 옴.</li> <li>- 지역 사회복지사가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하여 주도적으로 진행의사 보인 케이스.</li> <li>- 보호 방안 마련 이전 구더기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있던 불독 한 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후 현재 입양 대기 중.</li> </ul>	++	+++	-	+++
<b>100마리 이상</b>							
희망이네 '보호소'	개	여(50대) 전직 목욕탕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부터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된 사설보호소.</li> <li>- 애런원, 애신의 집, 아산천사원과 같은 대규모 사설보호소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체수 증가와 추가적인 보호소 유입을 막고 환경 개선과 자립을 위해 지원했으나 정상화 실패함.</li> <li>- 보호소의 쓰레기를 치우고 동물관리 부재에서 초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각각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됨</li> <li>- 애니멀 호딩과 사설보호소 문제가 오버랩된 전형적인 사례</li> <li>- 심각하게 야생화 된 개 33마리 구조 후 질병 치료 후 보호 중</li> </ul>	++	+++	-	-

사례	동물	성별 (연령대)	주요 호당내용	수집 강박	주변 민원	지자체 동물보호	사회 복지
둔포(반송원) '보호소'	개	남(70대) 전직 철도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천에서 사설 보호소 운영하다 화재 발생</li> <li>- 둔포로 이전하여 '반송원' 운영</li> <li>- 보호소에 불필요한 온갖 집기들을 수집하여 쌓아 놓음</li> <li>- 청소지원으로 상황 개선을 도모했으나 물품을 버리는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심</li> <li>- 동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근히 유지해 오다 화재로 120마리의 개들이 사망함</li> <li>- 개도살장에서 구조된 대형 개들이 갈 곳이 없어지자 수용해 주기도</li> <li>- 살아남은 개들은 안성평강공주 보호소로 이동하여 보호 받고 있으며 카라는 반송원의 폐쇄를 지원함</li> </ul>	+++	+ (와진 지역)	-	-

## 5. 애니멀 호딩 대응

애니멀 호딩은 원인이 각각 다르고 나타난 결과의 유형도 경우별로 다르다. 따라서 매 사례별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등 다각적 해결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애니멀 호딩은 영국 RSPCA에서 홍수, 산불 등 재난, 구제역 등 대규모 전염병 대응 등과 함께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고난이도 동물 이슈로 파악할 정도로 대응이 힘든 사안으로서 여러 기관과 단위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애니멀 호딩은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사후 대처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개입과 막대한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병적 수집 강박에 의한 경우와 동물보호 장치 미비로 인한 비의도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사례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우선 사설보호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지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유기동물이나 불필요한 출산에 의한 보호 대상 동물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번식장 판매장 반려동물 구입자 사육자에 대한 사전 교육의 실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 1) 호딩 사례 해결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 :

문제	스테이크 홀더
동물복지/ 동물의 고통	지자체 개입, 동물보호단체 자문 조력
소음, 악취, 동물의 배설물 및 오수	환경관련 부서, 지역 봉사단체
공공질서, 이웃과의 갈등	경찰의 개입, 동물보호감시원의 돌봄 계도
공공 위생과 동물원성 감염증	수의, 보건 부서
호더의 정신건강과 재발 방지	보건, 사회복지사

### 2) 법 제도 사회적 해결 방안

#### A. 현행 동물보호법

2018년 9월 21일 시행 동물보호법 8조 2항 3의 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육·관리 의무

[별표 1의2] <신설 2018. 9. 21.>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식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곰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인치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B. 정책실행/제도정비/사회문화적 해결책 도출

### • 선대응 방안

- 동물보호법에 따른 적정한 사육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및 처벌 규정 도입
- 동물보호법에 따른 적정한 돌봄 지원과 교육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중성화 의무화 또는 취약계층 중성화 무료 지원
- 수집 강박자의 동물 수집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치료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반려동물들의 무덤, 대규모 개농장의 폐쇄
- 연간 사회로 유입되는 60만 마리(추정치)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번식 매매 제어
- 취약계층(차상위층, 노년층 포함) 동물의 적정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
- 사설보호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위치 재정립

### • 후대응 방안

- 사육 관리상황 점검 또는 신고 통해 초기 애니멀호더 대응 원활화 및 초기 교정 착수
- 호딩 사례별 관련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동물보호 활동 및 행위자 생활지원 혹은 정신 치료 등 지원
- 자격 미달 사설 보호소의 점진적 폐쇄 및 발전 가능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애니멀 호더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 발 제 02 ·

## 고양이 애니멀 호딩 사례 검토와 특징

---

유주연 (사)나비아사랑해 대표





# 〈고양이 애니멀 호딩 사례 검토와 특징〉

(사)나비야사랑해 유주연 대표

## ‘고양이’ 애니멀 호딩 사건의 특징

- 소음이 적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시기가 오래 걸림
-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좁은 공간의 조용한 학대가 가능함
- 길고양이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의 폭력성(구조자라 믿는 애니멀호더 발생)
- 특정 이미지만을 전달하며 소비하는 미디어(무책임한 수집 발생)

## [유형 1. 아름다운 대상에의 미혹]

### 사례 1. 송파21 (2018)

- 악취와 유기정황으로 외부에 알려짐.
- 연령대: 2개월령~6살
- 21마리중 6년을 키웠다는 1마리만 중성화 되어 있었음.
- 다양한 품종을 수집하며 자체번식이 이루어짐.
- 오물 더미 속 방치로 인한 탈출, 지역 고양이 위협.
- 장염과 곰팡이성 피부병, 혈뇨 등
- 오랜 반려묘 5마리의 소유권 주장 - 각서 작성 후 4마리 양도







## 사례 2. 총주댐13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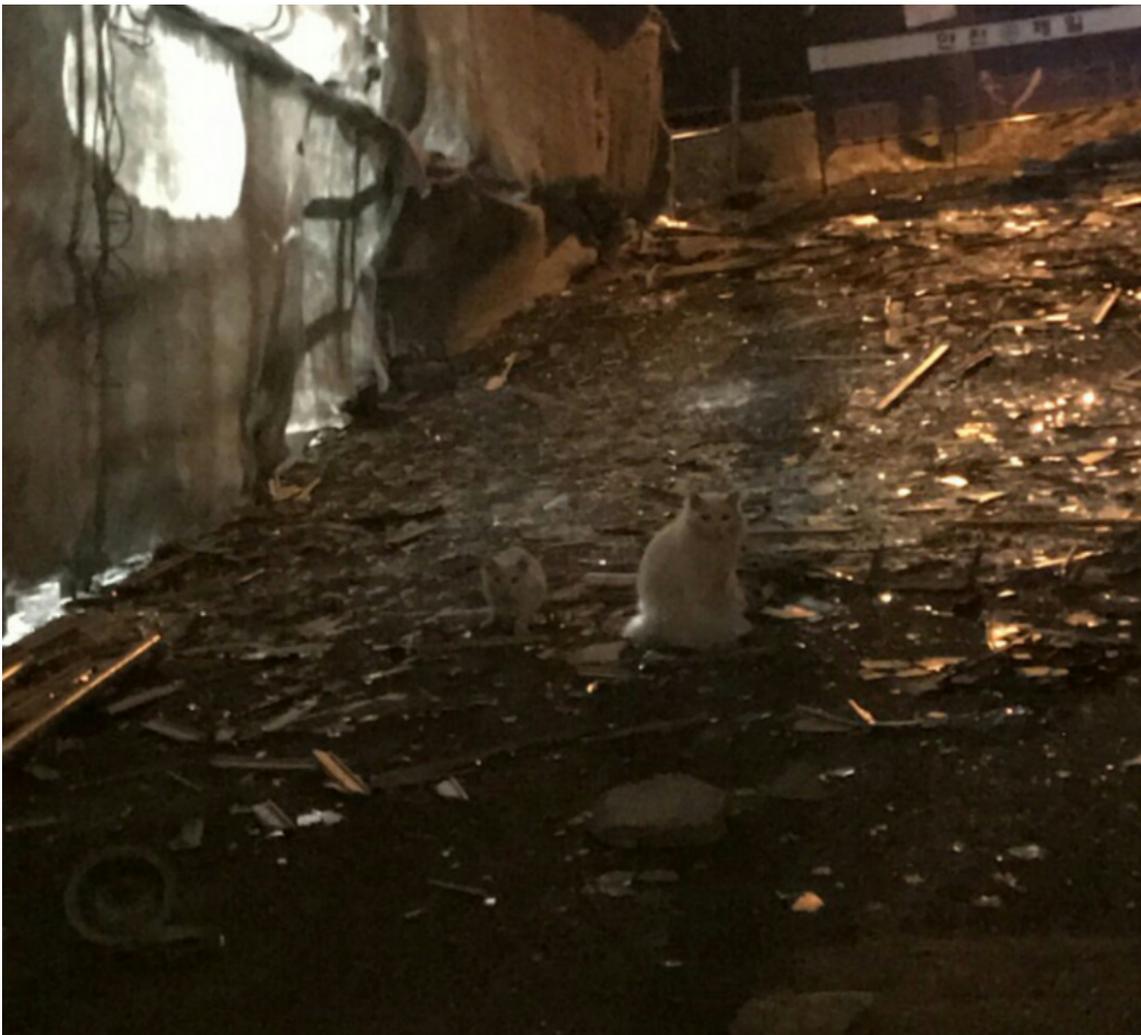
- 단프라 박스에 13마리를 넣어 유기.
- 연령대 1~2살
- 코숏 여아 1마리 증성화됨. 12마리 증성화되지 않은 스코티시폴드종 믹스
- 버린 후 총주휴게소로 직접 제보. 총주휴게소에서 작은 지역단체로 제보,
- 지역단체에서 나비아사랑해로 도움 요청
- 건강상태 양호.
- 처음 제보받은 총주 휴게소(동물농장출연)에서 2마리 현장 입양
- 추후 애견샵을 통해 교배 시도





### 사례 3. 아현동10 (2017)

- 건물 철거 전 유기 후 도주. 철거 이틀 전 긴급구조.
- 건물의 모든 문이 철거되고 유리창도 부순 상태였음.
- 거주자는 체납과 폭행사건으로 잠적.
- 연령대 3~4살
- 일부 선택적 중성화. 자체 번식 없었음.
- 모두 각각 다른 품종의 고양이 수집.
- 아비시니안, 터키시앙고라, 샴, 브리티시숏헤어 등
- 건강상 곤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모든 살림을 일체 두고 사람만 도주한 정황.





통 보 문

수 신 : 성명불상의 [redacted] 세입자  
제 목 : 강제퇴거조치에 관한 건

내 용

귀하는 당건물 [redacted]에 세입자로 계약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후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이후 현재까지 월세 1430만원과 각종 공과금 120만원을 합쳐 1550만원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또한 집주인을 폭행후 도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귀하의 행위는 공문서변조및행사, 사기죄에 해당되어 기 고소한 폭행죄외에 추가로 고소를 진행 하였으며,

아울러 당건물은 2017년 4월말경 이주예정인 관계로 귀하가 거주했던 [redacted]내의 물품을 즉시 반출하고 이주 하기를 바라며, 즉시 이주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귀하에게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바 입니다.

2017년 3월 22일 건 물 주 [redacted]

#### 사례 4. 인천 병원21 (2014)

- 다니던 동물병원에 데려와 비용을 지불하고 안락사 요구.
- 소식을 접했을 당시 이미 8마리 안락사 함.
- 연령대 2~3살
- 모두 증성화되지 않음.
- 21마리 모두 단두종의 페르시안 익스트림, 히말라얀 품종.
- 구내염과 장염, 각막궤양 등
- 장모의 단두종 고양이가 받아야하는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함.
- 자체 번식과 고양이들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
- 아내의 정신질환과 건강악화로 인해 남편이 안락사 요구.
- 병원측에서 끝내 암수 한쌍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구조에 협조하지 않음. (보기 드문 외모, 번식의도가 보임)
- 병원이 미용비와 레블루션 비용 요구.



모두 같은 품종의 아이들



삼의 의욕을 잃은 듯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



## [유형 2. 가여운 대상에의 연민]

### 사례 1. 활동가12 (2016)

- 지속적인 구조를 통한 수집
- 유기 후 해외로 도주
- 학대당하고 버려진 고양이를 구조하여 모금을 통해 치료하기도 하고 시보호소의 공고를 보고 구조의 목적으로 데려오기도 함. (작고 학대받은 품종묘에 대한 강한 연민과 집착, 치료하여 살리는 일에 대한 자기만족이 강함)
- 20대의 사회경험 없는 어린 나이, 가정환경이 불우하여 고양이 구조활동을 통한 만족감에 빠짐.
- 해외도주 후, 집에 남아있던 동생(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에 의한 학대정황 발견 후 구조.
- 모두 구조 후 치료와 중성화를 마친 상태였음.







## 사례 2. 인천 문학동21

- 원룸에 유기 후 도주.
- 연령대 5개월령~6살
- 모두 중성화되지 않음.
- 한 마리의 고양이를 5년간 키우다 길고양이에 대한 연민으로 최근 1년 이내 수를 늘리며 자체 번식한 경우.
- 3마리의 암컷 고양이들이 1년내 17마리 이상을 낳은 상황.
- 유기 당시 케이지에 성묘 암컷 3마리 격리 후 도주.
- 도주 전 아기고양이 입양을 시도하여 1마리 입양보냄.(고양이커뮤니티)
- 입양이 어려워 고민했다고 함.
- 현재 유기된 원룸에 임시보호 중.
- 6살인 첫고양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하지만 거절,
- 고시원 거주중이라고 함.



고양이 때문에 주변

임차인들의 민원이

비발치서 119 와 경찰이

압박하에 출입문을 개방하고

KEY를 봉쇄하였습니다.

이번 20일까지 방을 비우려

아이면 경찰과 함께 보내고

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 보내

방을 치우고 정리하겠습니다.

메모 보는데로 연락주세요.

- 주 인 -



### [유형 3. 무지와 방치]

#### 사례 1. 아현동 19 (2014)

- 다수 사육이 집주인에게 알려지며 곤란해지자 거제도에 방사를 할 목적으로 이동편을 알아봄.
- 연령대 2개월령~2년
- 모두 증성화되지 않음.
- 장염,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
- 길고양이게 밥을 주다 2마리를 집에 들인 후 번식.
- 근친번식이 이루어지며 약한 개체 다수 죽음.
- 본인의 고양이 개체수를 인지하지 못함.





- 공통점 : 거주지 불안, 경제적 무능력, 해결 불능, 도피와 포기
- 애니멀 호딩의 결과 : 방치 유기 / 안락사 / 방사
- 구조 경로 : 유기, 방치로 인해 제3자의 구조요청이나 민원

알려진 것처럼 소유강박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학대 대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문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문제와 결부하여 전반적 개선 필요.

규제와 처벌 / 지원과 독려

구조 후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있음

안산 호더 다운이

개인구조자의 충동적 구조에 의한 이어지는 애니멀호딩의 형태

애니멀호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명백한 범죄행위로서의 접근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 구조 필요 -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 지원사업으로서의 접근

• 패널토론 •

## 토론 01

---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에니멀 호딩에 대한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접근 및 외국의 사례 소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에니멀 호딩과 정신건강

얼마 전까지 미국의 정신건강 가이드라인은 hoarding disorder(HD)를 (저장)강박증 (obsessive-compulsive disorder)의 4가지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분류했었다. 미국정신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성인 1.2%는 강박 증세를 앓고 있었으며, 평생 동안 한번 이상 강박증세를 겪는 사람은 2.3%에 이른다. 여성의 발병률은 1.8%로 남성의 0.5%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러나 HD는 실제 세계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정신 기능이 감소하는 등 OCD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성격 장애, 불안 또는 우울증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동시에(comorbidity) 겪고 있다. HD와 OCD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HD가 일반적으로 강박 장애인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정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 강박증 환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치료방법인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와 SSRI라고 불리는 우울 증 치료제는 HD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에 들어서야 hoarding disorder(HD)는 정신 건강분야에서 독립된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진단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HD와 관련된 유력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이후 미국 심리학회는 HD를 별개의 특성을 지닌 명료한 형태의 정신 질환으로 규정했다. 미국정신의학회가 작성한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sup>1)</sup>은 HD를 ‘소유물을 축적하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유물이 버려 질 때마다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의 상응하는 느낌’으로 정의한다. 이 질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일부는 귀중한 물건을 축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오래된 잡지 또는 신문, 자신의 메모, 오래된 옷이나 우편물과 같이 별로(혹은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을 축적한다. 일반적으로 호더들이 보이는 특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근거나 또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sup>2)</sup> DSM-5는 에니멀 호딩

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정신질환의 신뢰할 만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관련 기준들을 통칭하는 정신질환 분류법이다. 지난 60년 이상 거듭 개정을 거치면서 정신 건강 분야에서 임상 수행을 위한 표준적인 참고 문헌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뉴얼에 포함된 정보는 의사와 심리학자, 카운슬러, 간호사, 직업 및 재활 치료사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사와 과학 수사와 법적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에게 유용하다. 정신 질환의 진단 및 분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물건을 저장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 같아서 모은다고 하는데 비해 에니멀 호더들은 자

을 HD와 관련된 상태로 묘사하고 "많은 수의 동물을 축적하여 영양, 위생 및 수의 치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동물을 질병, 굶주림, 사망 등의 열악한 상태 및 환경에 처하게 한 경우'로 정의한다. 그러나 에니멀 호딩은 다른 저장 장애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신과 질환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에니멀 호딩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단지 에니멀 호딩의 사례가 부족해서 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2-3000건의 에니멀 호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경우만 확인이 되고 있으며 동물 사육은 개인의 문제거나 동물의 문제라고만 치부하는 등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니멀 호딩의 문제가 과소평가되고 있다.<sup>3)</sup> 또한 에니멀 호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에니멀 호딩에 대한 주요 연구는 미국 메사추세츠, 스페인, 호주, 브라질 등에서 시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니멀 호딩이 다른 문화권 걸쳐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에니멀 호딩은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이다. 이 경우에 발견된 동물의 대부분은 아프고, 더럽고 기생충으로 덮여 있었다. 에니멀 호더의 집에 들어가면 죽은 상태로 발견된 동물을 쉽게 발견한다. 조사된 에니멀 호더의 집 80%에서 병들거나,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동물들이 발견되었다.

둘째, 에니멀 호딩은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에니멀 호딩이 발생한 장소에는 환경 독성을 포함하여 동물성 소변의 암모니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사람들의 호흡에도 위협적이며 벼룩과 진드기 같은 기생충 등 보건문제가 심각하다. (에니멀 호딩이 발견된 가구의 70-90%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동물의 숫자가 많을수록 동물매개 감염질병 위험이 커진다). 에니멀 호더는 이 같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살며 때로는 깨끗한 부엌이나 잠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셋째, 에니멀 호더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고양이, 개 또는 둘 다를 모으는 (주로 고양이가 더 많고, 다른 농장 동물이나 파충류를 모으기도 함)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년 이상의 여성이다. 또한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sup>4)</sup> 그러나 남성이나 온 가족 구성원이 호더인 경우도 있고 어린이나 다른 부양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거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다.

---

신들은 '불쌍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

3) 미국의 경우, 에니멀 호딩 보고 숫자는 지난 4년 간 두 배로 늘었다(2016년 기준). 매년 약 25만 마리의 동물이 에니멀 호딩에 의해 희생되고 있으며, 보고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이 22%, 여성이 78%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에니멀 호더들 중에 기혼자는 32.14%에 불과하다. 가장 이르게 에니멀 호딩을 시작하는 나이는 11-20세이지만 두드러지게 심한 증상을 보이는 나이는 주로 60세 이상이다. 브라질 연구에 의하면 73%가 여성, 75%가 저소득, 88%가 미혼상태, 64%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에니멀 호딩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에게 과도하게 집착한다. 이는 많은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린 시절에 겪은 학대나 방임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에니멀 호더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통찰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에니멀 호더들은 동물들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한다.<sup>5)</sup>

다섯째, 에니멀 호딩은 때로는 물건 저장 또는 치매 같은 다른 정신 질환과 함께 나타난다. 31%-100%의 에니멀 호더 들은 동물 이외에 다른 물건에 대한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었다. 여섯째, 에니멀 호더의 재발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없으면 100% 재발된다.<sup>6)</sup>

에니멀 호더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니멀 호더(혹은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니멀 호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에니멀 호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 많은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심각한 인간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에니멀 호딩이 발견되었을 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표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메사추세츠와 뉴욕 등 몇 개의 주 만이 에니멀 호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에니멀 호딩에 대한 정책과 개입은 단지 동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많은 경우 동물은 구조되고 격리되지만 사람에게는 처벌 이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개별 정신 건강 치료를 받아야 한다.

---

5) 이외에도 에니멀 호더들은 주로 '지나치게 감상적이다(high sentimental value), 결정장애(inability to make decisions)가 있다. 정리를 못한다(inability to organize), 통제가 필요하다 (need to be in control), 잊어버리는 것(forgetting)을 무서워한다, 압도적인 책임감(overwhelming sense of responsibility)을 느낀다, 물건을 버리는 것(letting things go)을 두려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6) 재발률이 높은 전형적인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소 등의 법적 절차 집행은 희생당하는 동물의 즉각적인 구조와 격리조치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호더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지 못하며,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지도 못한다. 둘째, 에니멀 호더에 대해 관련된 기관들과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데 있어서 동물보호단체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행정 기관 등의 관료적인 업무영역과 절차에 대해 적절하게 협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련된 단체란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기관, 공공보건 및 위생 위원회, 건축 위원회, 경찰서, 소방서, 동물 법 집행 및 보호 관찰 기관 등을 포함한다.

##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사례

1997년 설립된 미국 메사추세츠 애니멀 호딩 연구 컨소시엄(The 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 HARC)는 2006년 애니멀 호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sup>7)</sup> 이 보고서는 애니멀 호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협력적인 대응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HARC가 애니멀 호더를 진단하는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적 위생 환경, 공간, 영양 및 수의적 관리와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2. 이 같이 동물이나 가족에게 쾌적한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며, 3.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동물을 수집하거나 축적을 유지하려고 강박적으로 시도하며 4. 사람과 동물에게 생활환경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를 축소화 하려한다.

HARC 보고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애니멀 호더는 (1) 힘에 부치는 보호자(overwhelmed caregivers), (2) 구조자(rescuers), (3) 착취자(exploiters)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첫째, 힘에 부치는 보호자(overwhelmed caregivers)는 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능력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잘 돌보는 많은 수의 동물을 소유한 개인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실직, 건강 악화 등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그 동안 적절하게 보살피던 노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에 압도당하고 생활 조건이 악화된다. 이 같은 경우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수동적인 경향을 띠는 데, 바로 그들이 소유한 동물들 사이에서 계속 번식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부정(deny)하기보다는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동물을 그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그들이 도움을 원하지 않거나 지원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적 개입이 시작될 때 '구조자'나 '착취자' 유형에 비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다.

둘째, 구조자 유형은 동물 수집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이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동물의 죽음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보여서 안락사에 열렬히 반대한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동물을 적절히 돌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힘에 부쳐도 계속 새로운 동물을 계속 수집하며, 더 많은 동물을 쉽게 습득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동물 수집 방법은 능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종종 구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을 찾아다니고 구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당국이나 동물단체의 조사나 개입을 피하고 외부 영향을 적극적으로

7) Animal Hoarding: Structuring interdisciplinary response to help people, animals, and community at risk.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은 종종 자신들을 수 백 마리의 동물을 돌보는 합법적인 보호소나 영역의 대표자로 가장하기도 한다.

셋째, 착취자 유형은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유형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사회병리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과 관련된다. 이들은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며 인간과 동물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 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거부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합법적인 관심이나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구조자와 마찬가지로) 착취자들은 자신의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믿으며 동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극단적인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력과 카리스마를 포함하여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의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조작적이고 교활하고 자기애 적이며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동물에 정서적인 애착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개인이 HD에 대한 진단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대응 방식

유형	대화에 의한 설득	법적조치를 통한 위협	법적조치(기소)
착취자	별로 도움 안 됨	겁먹을 것 같지 않음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구조자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됨.	이들의 동기는 구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법적 위협은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법적조치를 통한 위협이 효과가 없을 때만 시행
힘에부치는 보호자	외부의 지원과 동물의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큼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제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불필요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뉴욕시의 사례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많은 뉴욕 시는 에니멀 호딩을 인간복지, 환경, 건강, 동물복지 및 재산 문제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다. 에니멀 호딩과 관련된 독립적 기관과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에니멀 호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여기에는 뉴욕 경찰국(NYPD), 뉴욕 소방서 (NYFD), 성인보호 서비스, 노화 방지 및 동물 관리국 (NYC), 동물 학대 방지를 단체(ASPCA), 보건 및 정신 위생국, 건축 및 시설국, 지역 사회위원회, 뉴욕시 주택 당국, 긴급 관리 사무소 등을 비롯하여 노인 및 기타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다루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 포함된다. 뉴욕 시 에니멀 호딩 개입 모델은 호더의 행동, 사육 조건, 지역사회 영향 및 제발 등과 관련된 사항 다룬다.

이들의 대응은 다음의 세 단계로 나뉜다.

1. 예방단계- 중성화 수술을 통한 번식 중단, 청소를 통한 환경 개선, 개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의뢰 및 연결, 추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2. 법적 개입 단계 - 동물 학대, 방치, 퇴거, 후견인 문제를 포함하여 동물복지 단체나 전문 단체를 통한 동물 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개입원인 평가와 같은 법적 개입
3. 응급단계: 개인 및 공중보건 문제로 인해 개인 및 동물을 구조하고 격리하기위한 대응 조치와 같은 응급 개입.

## NYC Animal Hoarding Assessment Tool

### Hoarding Assessment

Name \_\_\_\_\_ Date: \_\_\_\_\_

Address \_\_\_\_\_ Tel: \_\_\_\_\_

Additional Individuals in Apartment/House: \_\_\_\_\_

Person with Access to Apt/House: \_\_\_\_\_

Agency/Tel: \_\_\_\_\_

Referral Source: \_\_\_\_\_ Tel: \_\_\_\_\_

#### Apartment Condition Scale

- 0 No Hoarding, No Extreme Clutter
- 1 Messy, Piles Present
- 2 Continued Deterioration, Some Areas Not Accessible
- 3 Extreme Clutter, Partial Passageways
- 4 Extreme Clutter, No Passageway, No Access due to Conditions

Water	Electricity	Safety	Stability
<input type="checkbox"/> No water <input type="checkbox"/> Some water <input type="checkbox"/> Water fully available	<input type="checkbox"/> No electricity <input type="checkbox"/> Some electricity <input type="checkbox"/> Electricity fully available	<input type="checkbox"/> No Risk <input type="checkbox"/> High Risk	<input type="checkbox"/> Eviction Pending <input type="checkbox"/> Eviction Possible <input type="checkbox"/> Hospitalization Possible

#### Animal Hoarding

Number of animals reported: \_\_\_\_\_ Number of Animals visible: \_\_\_\_\_

Types of Animals: \_\_\_Dogs \_\_\_Cats \_\_\_ Other: \_\_\_\_\_

Animal Conditions (check all that apply)

- |   |   |
|---|---|
| <input type="checkbox"/> Friendly<br><input type="checkbox"/> Not friendly<br><input type="checkbox"/> Healthy<br><input type="checkbox"/> Sick<br><input type="checkbox"/> Injured<br><input type="checkbox"/> Reproducing | <input type="checkbox"/> Feral or semi-feral<br><input type="checkbox"/> Hair loss<br><input type="checkbox"/> One eye<br><input type="checkbox"/> Other: _____ |
|---|---|

Additional Agency Involvement

- |   |  |
|---|--|
| <input type="checkbox"/>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br><input type="checkbox"/> Department for the Aging<br><input type="checkbox"/>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br><input type="checkbox"/> NYPD/NYFD | <input type="checkbox"/> ASPCA<br><input type="checkbox"/> Emergency Response<br><input type="checkbox"/> Hospital/Crisis Team |
|---|--|

## 함의

1. 국내에서 애니멀 호딩의 문제를 동물 복지 차원만이 아닌 호더를 비롯한 사람의 문제도 함께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2.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한 당국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3. 애니멀 호딩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개입 및 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4.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멀 호더의 유형과 단계별로 적절한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
5. 우리나라의 애니멀 호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



• 패널토론 •

## 토론 02

---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교수/범죄심리학회 회장





# 에니멀 호딩 : 범죄심리학적 접근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교수/범죄심리학회 회장)

## 1. 머리말

최근 양진호씨의 폭력적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퇴사한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남겼던 말이다. 그리고 17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식인까지 저지른 미국의 제프리 다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쇄살인마 유영철,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김모 양도 모두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폭력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은 많다. 동물을 학대한 적이 있는 사람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저지른다. 폭력범죄 수형자 가운데는 어린 시절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비폭력범죄 수형자보다 많았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고 한다. FBI의 연쇄살인범 387명에 대한 분석에서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기 전에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법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FBI는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 50개 주 전 지역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듯 동물학대는 강력범죄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범죄예측지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 2. 에니멀 호딩의 원인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에니멀 호딩도 동물학대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에니멀 호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에니멀 호더들의 심리적·정신적인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에니멀 호딩의 원인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인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행동이 그 원인이다. 상실감과 박탈감은 중요한 타자인 물리적 대상과의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동기 때는 부모의 이혼, 거절, 무관심, 심리적·정신적인 학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배우자

1) FBI는 연쇄살인범의 어린시절에 대한 연구결과, McDonald Traid라는 중요한 3가지 경험으로 야뇨증, 불안, 동물학대의 경험을 제시한바 있다.

의 사망이나 이혼, 신체적 질병, 경제력의 상실 등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 올수 있으며, 이때 상실감과 박탈감은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한 추동(drive)의 역할을 하게 되며 심리적·정신적 싱크홀을 채우기 위한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하게 만든다. 이른바 심리적 보상이나 퇴행적 반응의 일환으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과도한 애착현상으로 자신의 보호와 관리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에니멀 호딩을 하게 된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연구 결과, 부모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아이는 ‘불안정 애착형’에서 소유물에 대한 극단적인 애착, 소위 ‘저장강박장애’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들은 사람보다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물건에서 안정과 위로를 발견한다.

둘째, 에니멀 호딩은 일종의 정신장애인 저장강박장애가 그 원인이다.

에니멀호딩이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장애·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이를 일명 디오게네스 신드롬 또는 메시 신드롬이라고도 한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판단한다. 저장강박장애는 DSM-V에서 2013년부터 새로운 진단명으로 분류한 증상이다. 성인의 약 5%가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이며, 보통 10대에 발현되며, 이중 80%가 직계 가족 중 한 명과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실제 물건의 가치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껴 차마 버리지 못하는 정신 질환이며, 이들의 75%는 불안증과 우울증, 치매, 조현병을 동반한다고 한다.

셋째, 전두엽기능의 장애가 그 원인이다.

에니멀 호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전두엽 기능의 장애를 제시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치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인지 버려도 될 것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일단 저장해 둔다는 것인데, 의사결정 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전두엽은 사이코패스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사이코패스의 연구에서 전두엽의 외상적 위축이나 기능적인 장애, 즉 세로토닌의 공급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로토닌이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인간의 공격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넷째, 자존심의 회복 내지 힘의 과시가 그 원인이다.

다수의 에니멀 호딩자들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친구, 이성관계, 직업, 결혼 등의 일상적인 활동이 원만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지지적 관계가 충분하지 못하

여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평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적으로는 지배, 조종, 통제의 욕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외현적 표출에는 제한적이다. 이들은 손상된 자존심의 회복이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심리적 욕망을 자신보다 강한 대상에 표출하지 못하고 약하고 순종적인 애완동물을 수집하여 방치하고 학대함으로써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힘을 과시하게 된다.

### 3. 결론

동물보호법상의 애니멀호딩을 포함하여 동물학대죄에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친구를 살해하는 10대 소년, 고양이를 불태워 죽이는 청소년, 다수의 애완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성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생명을 대상으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때문이지, 그들이 언젠가 더 나쁜 행동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이 더욱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동물을 범죄행위의 정당한 피해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동물학대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물보호법 내에서 동물이 갖는 지위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며, 모든 생명이 존엄과 존중의 대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더 안전하고 덜 폭력적인 사회가 되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그런 법률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 첨언할 말은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그와 더불어 치료적 접근과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병행할 때 더 효과적일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 패널토론 ·

## 토론 03

---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 애니멀호딩 관련 토론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동현

## □ 동물학대는 비인도적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

- 그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정책 방향과 같은 취지로 올해 3월 20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게 되었음
  - 소위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이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 것인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 의무는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사육공간의 위치, 재질, 크기 등 요건, 위생·건강관리 관련 소유자 준수사항 등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 □ 동물학대의 방지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첫째, 동물보호법령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애니멀호딩과 관련하여서는 과학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른 동물학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벌칙 상향 및 비례성 제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둘째,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경찰 등 현장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인력 증원이 시급함

-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인력·시설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 셋째,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가 요구됨
  - 동물과 사람은 생명체로서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계층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임

• 패널토론 •

## 토 론 04

---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





# 애니멀 호딩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취급과 한계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이해운 변호사

## 1. 애니멀 호딩 행위의 특성

- 애니멀 호딩(hoarding)이란 수동적 형태의 동물학대로,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수의 동물을 기르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함.
- 애니멀 호딩은 적극적·능동적·공격적인 학대행위가 아닌 수동형·방치형 학대행위이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대행위가 발현되는바, 행위 초기에 학대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점진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로 변화(악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적시에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반면에 다른 학대행위와 달리 지속성을 갖고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학대를 입거나 입을 위험에 처한 동물을 보호 및 구조할 가능성이 미미하게 존재함.

## 2. 현행 동물보호법상 애니멀 호딩의 취급

- 애니멀 호딩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2018. 3. 20.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시행 2018.9.21.]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sup>1)</sup>에 대한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애니멀 호딩 행위는 논란의 여지 없이 법상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게 됨.
- 애니멀 호딩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학대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됨.

동물학대로 규정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b>3의2.</b>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

1)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p><b>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b></p> <p>④ 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lt;신설 2018. 9. 21.&gt;</p> <p>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lt;신설 2018. 9. 21.&gt;</p>
애니멀 호딩 피해 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 근거	<p><b>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b></p> <p>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gt;</p> <p>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p>
동물보호센터의 애니멀호딩(구체적으로는 시행령 별표1의2 의무 위반시)행위시 지정 취소 근거	<p><b>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b></p> <p>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3. 21.&gt;</p> <p>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동물영업자의 애니멀호딩(구체적으로는 시행령 별표1의2 의무 위반시)행위시 등록 또는 허가 취소 근거	<p><b>동물보호법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b></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3. 21.&gt;</p> <p>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p>
처벌 근거	<p><b>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b></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7. 3. 21.&gt;</p> <p>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p>

### 3. 현행 동물보호법상 한계 및 나아갈 점

#### ○ 애니멀 호딩의 피해대상인 동물의 범위 확대 필요성

- 현행 법률에서 애니멀 호딩 행위의 유형에 포섭되는 피해 동물로 열거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이하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 동물')는 일반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기는 하나, 현행 법문에 의하면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 동물 이외에 반려 목적 또는 영업, 보호소 운영에 수반하여 기르는 동물들의 경우는 애니멀 호딩 유형에서 제외되어버림.
- 미국에서 애니멀 호딩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 중 말, 거북이에 대한 호딩 행위도 포함되

어 있다는 점<sup>2)</sup>을 고려하면(State v. Walder, 952, So.2d (La, Ct, App, 2006)). 피해 대상 동물을 열거하여 제한할 이유가 없음.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순수한 반려 목적 또는 영업을 위하여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다만 피해 대상 동물을 한정하여 열거하지 않는 경우 사육·관리 의무가 각 동물마다 상이하여 규정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법률 규정을 토대로,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 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동물의 습성에 따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괄적인 규정으로 포섭하는 것을 제안함.
- 결국, 제8조 제2항 제3의2호는 한정적 열거 형태를 취함으로써 법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음.

##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 및 관리 의무의 준수 실태 점검 및 신고의 어려움

- 애니멀 호딩 행위가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으나, (주로 집안이나 사유지에서 외부인에게 밝혀지기 어려운 수동적 형태로 발생하는 애니멀 호딩이라는 학대 행위에 따른 태생적인 한계 이기는 하나) 별표1의2 사육관리 의무를 교육, 점검 및 위반 여부의 판단,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부존재.
- 점진적으로는 시행령이나 별도의 운영규칙 등을 통해 애니멀 호딩 신고 절차와 신고시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통한 호딩에 판단되는지의 점검 -> 판단 -> 교육 및 고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또한 애니멀 호딩 행위로 신고 등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육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아닌 학대방지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

## 4. 결론

-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애니멀 호딩이라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입법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성과로 판단됨.
- 10월경 청주시에서 발견된 애니멀 호더에 대하여 동물학대로 고발하기로 한 사안이

2) 단, 해당 사례는 119마리의 개, 44마리의 말, 7마리의 거북이를 사육한 경우로서 특정 종에 대한 호딩 행위는 아니며 다양한 종에 대한 호딩 행위로 처벌받은 것임

있음.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최초의 애니멀 호딩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음.

- 발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애니멀 호딩은 오히려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하기도 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번식장, 열악한 지자체 보호소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사설보호소 등의 문제가 얽혀있음.
- 따라서 애니멀 호딩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하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제도 설립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

• 패널토론 •

## 토론 05

---

박운선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 사설보호소와 애니멀 호딩의 위험

-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동물보호 여건에서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 애니멀 호딩?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

사설보호소와 애니멀호딩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동물보호단체 행강에서 운영하는 행강 유기견보호소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한다.

### 1.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집 (줄임: 행강집)' 사설보호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목적, 경과

- 2003년 애견 번식장을 하던중 너무 어린 강아지들을 어미견에게서 떼어내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어미견에게 또다시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림
-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막내 딸이 안락사 위기에서 데리고 온 피부병 걸린 유기견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분양'한 강아지들도 이렇게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04년 번식장을 그만두게 됨
- 데리고 있던 종견과 모견들은 중성화 후 입양을 보내고 유기견들을 데려와 보호하기 시작
- 애견 번식장에서 종견 혹은 모견으로 사용되다 생산력이 떨어진 개들이 중간상인을 통해 애견 경매장을 거쳐 다시 번식장으로 팔려가 종,모견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도살장으로 팔려가 개소주감으로 도살되든지 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 개들을 구조하여 보호하다 입양 보내기 시작
- 행강집은 2004년 처음 유기견보호소를 시작한 뒤 이후 백암면에 신견사를 신축하여 이전
- 맨 처음 보호견들이 생활하던 시설은 여느 번식장의 케이지와 동일한 조건의 아주 열악한 시설이었음
- '우선 목숨을 살리기만 하면 된다'는 다급한 마음에 동물들의 복지와는 상관 없이[지금 생각하면 호터] 안일한 생각을 갖고 보호소에 동물들을 입소시킴
- 보호견 수가 많을때에는 좁은[200평] 시설에 400여 마리가 넘는 많은 동물들을 수용
- 당시 관리의 부재를 느끼면서 입소 제한과 더불어 입양[유기견 입양봉사카페들과 연계]을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

- 행강집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를 오기 시작한 2007년 8월부터 개체 수를 150여 마리로 줄일 수 있었는데 동물보호단체[카라]에서는 수의료[중성화]/미용/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해줌 - 이후 동물들의 미중성화로 인한 자체번식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

## 2. 행강집 사설보호소의 운영방침과 자립형 보호소를 향하여

- 행강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 지자체 시보호소의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하거나 애니멀 호더에게 학대를 받던 개들. 개농장이나 개장수에게서 도살 직전 구조한 개들도 있음. 현재 대형견 94마리를 포함하여 총 263마리의 개들을 보호중
- 입양이 가능한 개들은 최대한 입양을 보냄. 이후 나이가 많아 사망하는 동물들이 있어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는 내에서 구조 및 입소를 시키고 있음
- 행강집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견들: 개인 활동가들이 구조한 한 두 마리의 개들은 입소가 안됨. 10여 마리 이상 대단위로 구조해야 하는 개들[방치, 학대, 개장사에게 팔려갈 위기 등]에 대한 구조 목적 입소를 허용하고 있음
- 행강집 운영 방법: 자립형 사설보호소를 목표로 10년 넘게 운영중. 토론자가 지내던 공간을 개조하여 가정견들을 대상으로 영입하는 애견호텔을 운영, 이로써 보호소 운영비를 조달해 옴. 지금까지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애견호텔을 통해 재원을 자체 조달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행강집이 부분적으로라도 자립형 보호소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 보호소 설립 초창기 어려운 시기에 1)한국사료[더독]의 2년간에 걸친 꾸준한 사료 지원을 받게 된 것과 2)동물보호단체[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과 만나게 된 것이 주요함. 어려울 때 보호소로의 사료 지원과 봉사 활동 등이 커다란 힘이 되었음.
- 현재 행강집이 타 사설보호소와 다른 점: 가족[딸]이 운영하는 행강애견호텔 수익금을 지원받아 보호소 운영에 대한 재원을 60% 정도 조달. 나머지 40%는 동물보호단체 행강 자체 회원 및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기부금으로 충당.

## 3. 보호소의 애니멀 호딩의 위험과 대안의 단초

- 토론자 또한 언제든 애니멀 호딩으로 불릴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보호소를 운영해 옴
- 애니멀 호딩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자립형 보호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론자의 의지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뜻과 마음이 합쳐진 것

- 보호소 설립 초기 사료 지원처와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을 하는 동물보호단체를 만났던 것도 행운
- 보호소 운영 15년
- 그 이전부터 토론자는 항상 개들의 옆에 있었고 개와 관련된 동물생산업(번식장), 개식용 산업(개농장, 개장수, 개도살업자) 등 개와 관련된 일선 현장의 일들을 잘 알고 있음
- 이에 지난 2016년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노력도 하고 있고 표창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법이 통과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며 움직이고 있음

## 사설보호소와 애니멀 호딩

사설보호소의 일부는 애니멀 호딩 문제를 안고 있다. 누가 그들을 호더로 만들었나?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왜 호딩으로 귀결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려는 노력은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

### 〈행강집이 구조한 애니멀 호딩의 대표적 사례 3〉

- 가. 서울 성북구 가정[아파트]에서 말티즈 암2, 수1를 반려견으로 키우다 새끼를 출산하면 중간업자를 통해 팔던 견주. 욕심이 생겨 견주는 가정번식을 하려고 개체 수를 늘리다 36마리가 된 상태에서 개들을 방치.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개들을 구조한 사례 [불법 번식판매]
  - 나. 경기도 화성시 개농장에서 70대 노인이 진도 믹스견들을 여름에 개장수에게 팔려고 뜰장에서 기름. 구조자들과 돈을 모아 이 개들을 매입하여 구조하고 사육자에게 사육포기각서를 받고 농장을 폐쇄시킨 사례 [불법 건축물, 환경오염, 그린벨트지역]
  - 다. 경기도 용인시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현장답사한 결과, 장애인 딸을 방치하는 한편 시골 동네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발바리 등 작은 믹스견들을 수집하여 50센치의 줄에 묶어 노지에 방치하여 사육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사육자인 60대 후반의 여성을 설득하여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개들을 구조 [전형적인 애니멀호더]. 이 여성분은 정신 치료차 강제입원 됐고 장애인 딸은 인근 요양 재활병원에 입원함.
- 위 3가지 유형 모두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건만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 행정처에서 조치하거나 지원해 주지 않았음

- 민간 동물보호 단체나 활동가들이 사비를 털어 10마리를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을 보낸다 하면 100마리 이상을 출산시켜 판매를 하는 불법 번식장이 도사리고 있음
- 여기에 개식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동물학대 개농장과 잔인하게 도살을 일삼는 불법 개도살장이 방치
- 불법 번식과 유통, 판매를 규제할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행정처에서 집행이 온전하지 않고 도살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발의가 된 상황에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 불쌍해 한 마리, 두 마리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다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욱 곤란해지면 가족과 주변사람과도 거리가 생기고, 그리하여 결국 혼자 마음의 문을 닫게된 애니멀 호더의 사례들을 보고 알게됨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애니멀 호딩 발생도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
- 애니멀 호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는 개식용 문제 해결과 불법 동물생산에 대한 확실한 제어, 그리고 동물등록제 확대실시
- 현재 263마리의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스스로조차 앞으로 애니멀 호더가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음
- 개식용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토론자가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형편이 어려워져 관리의 부재가 생겼는데 개들을 보낼 곳이 마땅히 없다면, 그나마 동물들을 보낼수 있는 곳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시보호소라면 스스로 모든 개들을 끌어안고 호더처럼 살아갈지 모르는 일
- 한국 정부에서 동물복지 훼손의 구조적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개식용 문제와 동물생산업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동물등록을 확산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끝-